

새마을금고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제정 2020.11. 6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 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③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 ④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제5조에 명시하는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 요청 시 금고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제3조(금융정보조회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신청 시 금융정보가 이용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금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금고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금고는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이고, 00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금융정보 종류)

금고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잔액조회: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
2. 거래내역조회: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거래내역(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등) 조회

제6조(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 ① 사용자가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금고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고는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실계좌번호 또는 실계좌번호를 치환한 핀테크이용번호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으로 통지합니다.
-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된 연락처로 금고는 사용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④ 금고는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1년 이내 단위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금융정보조회 중단)

-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금고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는 경우 금고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금고는 이를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금융정보조회 해지)

- ①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금고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제9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0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금고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금고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금융정보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2020.11. 6>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3. 3.3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개정 후 약관은 시행일 전 가입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새마을금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약관

제정 2020.11. 6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 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③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 ④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으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한 사전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고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금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금고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금고는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출금이체)

- ① 이용기관이 금고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금고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고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는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00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출금한도)

-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금고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 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철회로 봅니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금고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금고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금고의 출금이체 해지)

금고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출금이체 통합관리)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 ② 금고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금고 채널(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금고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금고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금고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칙 <2020.11. 6>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